

의안번호	2126244
의 퇴 인	천준호 의원
회 답 일	2024. 2. 20.
추 계 번 호	24F0023
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— 장애인활동지원기관에 대한 세액환급 특례 신설

【비용추계서】



국회예산정책처
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

I. 비용추계 결과

- 개정안에 따라 장애인활동지원기관에게 2020년 1월 15일부터 2023년 3월 13일까지 과세된 등록면허세 및 주민세에 대한 환급특례를 신설할 경우 지방세는 2024년 67.6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계됨

[표 1]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: 2024년, 등록면허세 및 주민세

(단위: 억원)

	2024	누적	연평균
장애인활동지원기관에 대한 세액환급 특례 신설 (안 제22조의5 신설)	-67.6	-67.6	-67.6

주: 장애인활동지원기관에 대한 세액환급 특례 신설로 인한 환급액은 2020~2022년간 장애인활동지원기관의 등록면허세(면허분) 및 주민세(사업소분, 종업원분)의 신고·부과액과 동일한 수준으로 2024년간 발생한다고 가정하여 추계

I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22조의5 (장애인활동지원기관에 대한 세액환급 특례)	○ 장애인활동지원기관에게 최근 3년간 과세된 등록 면허세(면허분) 및 주민세(사업소분, 종업원분)에 대해 환급특례 신설 － 환급대상: 2020.1.15.~2023.3.13.간 장애인활동지원 기관의 등록면허세(면허분) 및 주민세(사업소분, 종업 원분) 부과분 ※ 단, 수익사업에 관계되는 부과분은 환급대상에서 제외	조세지출 (지방세)

III.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

1.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추계여부	비고
1	안 제22조의5(장애인활동지원기관에 대한 세액환급 특례)	○	

2.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

- 특례 신설로 인한 환급금액은 행정안전부에서 제출한 2020~2022년간 장애인활동지원기관의 등록면허세(면허분) 및 주민세(종업원분, 사업소분) 신고·부과액과 동일하다고 가정
 - 2023년 1월 이후 발생한 장애인활동지원기관에 대한 등록면허세 및 주민세는 2023년 3월 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 개정으로 既 감면대상
 - － 따라서 특례 신설에 따른 환급액은 2020~2022년간 과세된 금액과 동일하다고 가정
- 개정안은 2024년에 시행되며, 연내에 환급이 이루어진다고 가정

3.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

(1) 제도 개요 및 관련 실적

- (제도개요) 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 제22조제5항에 따라 사회복지법인 등은 등록면허세 및 주민세를 감면받으며, 2023년 법률 개정으로 감면대상에 장애인활동지원기관이 포함
 - 동 제도는 사회복지법인 등이 사회복지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와 주민세 사업소분 및 종업원분을 면제
 - － 감면대상인 “사회복지법인 등”은 2023년 법률 개정으로 「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장애인활동지원기관 포함

[표 2]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등록면허세 및 주민세 감면(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 제22조제5항) 개요

구분	내용
공제대상	- 「사회복지사업법」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- 양로원·보육원·모자원·한센병자 치료보호시설 등 사회복지사업 단체 - 「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장애인활동지원기관(2023년 개정으로 포함)
공제내용	- 등록면허세 면허분 면제 - 주민세 사업소분 및 종업원분 면제 ※ 단, 사업소분은 연면적분 ¹⁾ 에 한정하여 적용
적용기한	- 2025.12.31.까지

주: 1) 사업소분 세율은 기본세율(사업주에 따라 5~20만원 과세) 및 연면적에 대한 세율(사업소 연면적 1㎡당 250원)로 구성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 작성

□ (감면실적) 2020~2022년간 장애인활동지원기관에 과세된 등록면허세 및 주민세는 총 67.6억원 수준

- 세목별로 살펴보면, 등록면허세(면허분) 0.2억원, 주민세(종업원분) 66.7억원, 주민세(사업소분) 0.6억원 수준

[표 3] 장애인활동지원기관의 등록면허세 및 주민세 과세현황: 2020~2022년
(단위: 억원)

	2020년	2021년	2022년	2020~2022년
계	15.6	23.5	28.5	67.6
- 등록면허세(면허분)	0.1	0.1	0.1	0.2
- 주민세(종업원분)	15.3	23.2	28.2	66.7
- 주민세(사업소분)	0.2	0.2	0.2	0.6

주: 주민세 사업소분은 연면적분만 집계
자료: 행정안전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

(2) 추계방법 및 결과

□ 개정안에 따라 장애인활동지원기관에게 2020년 1월 15일부터 2023년 3월 13일까지 과세된 등록면허세 및 주민세에 대한 환급특례를 신설할 경우 지방세는 2024년 67.6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계됨

- 향후 개정안에 따른 세수효과는 2024년 연내에 전액 발생한다고 가정하여 추계

[표 4]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: 2024년, 등록면허세 및 주민세
(단위: 억원)

	2024	누적	연평균
장애인활동지원기관에 대한 세액환급 특례 신설 (안 제22조의5 신설)	-67.6	-67.6	-67.6

IV. 부대의견

□ 없음

V. 작성자

□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세제분석2과	박정환	백경엽

□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박정환	02-6788-4835	jhpark83@assembly.go.kr